# 바지락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2025년 1·2월호

2, 3면 윤석열 내란 사태와 노동조합과 시민의 연대
4, 5면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6, 7면 통상임금 기준 변경과 주의할 점
8면 QR코드 홍보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전국금속노동조합

#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아니 적잖은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꿈속에 있던 그 시간,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에 금속노조는 이미 타협 없는 저항을 선언했습니다. 위의 문장은 윤석열의 내란에 굴복하지 않고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성명서의 첫 줄입니다.

그날 밤 여의도 국회 앞은 영화보다 긴박했고, 역사보다 결연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국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용서할 수 없어 한겨울 밤바람을 가르고 달려왔습니다. 마찬가지 마음으로 달려온 동료 노동자, 학생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이 바뀐 그날부터, 한국 제조업의 최전방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19만 명의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12월 5일과 6일, 11일 파업을 벌이고 2차, 3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모인 시민과 함께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12일에는 서울로 집결해 윤석열이 틀어박힌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진격해 윤석열 체포를 외쳤습니다.

12월 7일과 14일,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하기 열망하며 여의도에 모여든 시민들에게 금속노조는 든든한 동료였고 친근한 이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이 노조는 ‘폭력배’고 ‘불법 집단’이라고 몰아붙인 선동과

덧칠을 시민들은 결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연대고 그것이 민주주의였습니다. 연대한 시민들은 21일과 22일, 경찰에 고립된 농민들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위한 보통 사람들의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란의 추악함을 뚫고 나온 아름다운 저항입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존재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경영을 감시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이 일하는 일터가 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곳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성폭력, 직장 갑질이 없는 일터,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없는 직장, 노동조합이 만듭니다.

이 글을 쓰는 2024년의 마지막 날, 내란범 윤석열은 아직 체포되지도 감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금속노조가 이를 악물고 내란 세력 청산하는 2025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 2025년부터 개정되는 노동 관련 법률 꼼꼼히 알아보고 내 권리를 꼭 지켜봅시다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6,270원으로 인상됩니다. 회사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꼭 확인해 봅시다.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 최근 3년 내 임금 체불을 2회 이상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피해를 본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됩니다. 체불임금의 최대 3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신용 제한, 정부 지원 및 공공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폭염, 한파에 따른 예방조치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 한파에 따른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방조치로는 혹서기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나 무더운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 혹한기 방한 물품을 지급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시원하고 따뜻하게 일할 권리를 찾읍시다.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2025. 2. 23. 시행)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주 8시간 근로 노동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2시간 근로 단축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32주 이후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4. 11. 25. 이후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부터 적용)

너무 짧았던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 20일을 3회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2025. 2. 23. 시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이 연장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급여의 상한액 |
|---|---|
| 육아휴직 1~3개월 | 월 250만 원 |
| 육아휴직 4~6개월 | 월 200만 원 |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 월 160만 원 |

**2025년 개정되는 노동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꼭꼭 기억해보아요. 만약 내 직장에서 새로 개정되는 노동 관련 법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금속노조와 상담하세요! 1811-9509**

##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다시 해봅시다

작년 대법원에서 12월 19일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되는 임금의 이름이 아니라,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 1.5를 곱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먼저 내가 받는 기본급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상여금)를 모두 더한 뒤에, 이를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기본적인 근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노동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닌 돈’은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상여금을 지급 시점의 “재직자에게 한정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나, “근무일수 X일 이상 노동자에게 한정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취업규칙 등에 쓰여 있으면 통상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런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그동안 통상임금 계산에서 누락되었던 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사업주는 상여금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꼼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유리한대로 바꾸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강요하여, 기존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던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꼼수
  (ex) 상여금을 삭제하고 대신 실적이 연동되는 생산장려수당 등을 신설)
-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향후 기본급 인상에 연동시키지 않기 위해 정률수당을 정액수당으로 변경하는 꼼수
- 고정OT(고정시간외수당) 시간을 삭감하는 꼼수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사인하면 안됩니다. 위와 같은 꼼수가 있다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에서나 1811-9509

## 정당한 내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챙겨 받읍시다!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한**
**길잡이 「바지락」**
**QR코드 스캔하고 나의 권리 찾자!**

###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바지락〉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 금속노조 소개

금속노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SNS에서 금속노조의 사진과 영상을 보고 싶다면? 찰칵!

## 금속노조 마스코트 금방이

금방이는 '금' 속 노조는 노동자들의 '방' 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출범한 2001년에 태어난, 23살의 청년 노동자예요. 인형탈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이 되지 못하고 항상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금속노조에서 마스코트로 일하고 있답니다.

노조 없는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금방이는 자신과 같은 노조 없는 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전국 산업단지에서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최저임금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가입 문의 1811-9509**